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1
----------	-------

발의연월일 : 2021. 7. 28.

발 의 자 : 이규민 · 김주영 · 이수진^(비)

정정순 · 이재정 · 윤미향

박 정 · 김두관 · 이동주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전체가 불에 타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등)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u>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 5. (생략) ② (생략)	제108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